#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07.11. 30.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공무원여비규정」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 시행키 위함임

## 2. 주요골자

가.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 기준 설정(안 제3조제1항)

-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 적용→ 2~3급 일반공무원 수준
- 나. 여비결재와 정산방법 등 공무원여비개정규정 준용(안제4조)
-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 결재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의무화
- 1주일 내에 사용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공무원에게 정산신청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

####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제8조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 조제2항"으로 본다.
-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7.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 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이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무원여비규정

- 제8조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u>정부구매카드</u>(이하 "<u>정부구매카드</u>" 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u>정부구매카드</u>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3] [[시행일 2008.1.1]]

-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06.3.29 제19414호(공용차량관리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2 28, 2000 4 18,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 제 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u>「공용차량관리규정」</u>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제19414호(공용차량관리규정)]
  -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98 2 28, 2001.3.20.]

####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u>「국가공</u>무원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 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 3 20]
-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 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 산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u>장관</u>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 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98·2·28, 99·5·24, 2000·4·18]
- ②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시행일 2008.1.1]]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2 28, 2000 4 18, 2007.11.13] [[시행일 2008.1.1]]
-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u>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2 28, 99 5 24, 2000 4 18]
-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 상에 관한 사항은 <u>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u> 정한다. [개 정 98 2 28, 99 5 24, 2000 4·18]
-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2 28, 99 5 24, 2000 4 18]
-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수 있다. [신설 2001 3 20]

## □ 국가공무원법

- 제71조(휴직)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2004.3.11, 2007.3.29>
  -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 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2007.4.27>

-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 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 하게 된 때
-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 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 □ 평창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 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제1호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 (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 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 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 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 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 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 1]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규 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 함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 터 5년간
승 용 (업무용)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일 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대형 및 중형. 다 만, 일반형 승용차 량을 제외한다. 중 형 (배기 량 이	○ 순찰·수사·정보용 등(운행 량이 많거나 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 함 용 화 루 수 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급 행정기관	6년간. 다만, 대형 승 합자동차는 8년간

#### 비고

-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의한다.
- 2. 일반형 승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2호 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평창군관용차량관리규칙 [별표1]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기량 2000cc이상 - 군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 부군수	5년간
승용 (의전용)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 군의 본청 - 군의 의회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배기량 2000cc미만  ・4급이상의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  ・군의 의회 ・강사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차량의 최초
	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이상 1,5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등록일로부터 6년간
	경형승용차(배기량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 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이 상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이 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키라이 키ラ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 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
	경형승합차(배기량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5톤이 상이거나,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이하인 차량을 말 한다)	·단위행정기관	등록일로부터 6년간
	1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배기량8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청소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	구급차	·단위행정기관	
	분뇨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진료차	·단위행정기관	등록일로부터 6년간
	이동수리차	·단위행정기관	
	트럭트랙타	·단위행정기관	
	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	
	렉카차	·단위행정기관	
	소방고가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소방굴절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차	소방방수탑차	·단위행정기관	
	소방화학차	·단위행정기관	
	소방배연차	·단위행정기관	
	소방조명차	·단위행정기관	
	소방펌프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소방물탱크차	·단위행정기관	등록일로부터
	소방구조공작차	·단위행정기관	6년간
	소방구급차	·단위행정기관	
	소방지휘차	·단위행정기관	
	소방순찰차	·단위행정기관	
	소방진단차	·단위행정기관	
	소방다목적차	·단위행정기관	
	소방기타차	·단위행정기관	
	기 타	·단위행정기관	